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56 호

2007년 6월 1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74호(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75호(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2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81호(차량초과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3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82호(도로지정 공고(수산동 339-2, 338-4)) 3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85호(남동구 사전채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3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87호(대부업 등록 직권취소 공고) 4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89호(200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90호(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5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93호(만수동 성현로 일원 교통영향분석 공고) 6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99호(2007. 5월 법인균등할 법인세할 주민세 공시송달 공고) 6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00호(2007. 5월 수시분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공시송달 공고) 6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01호(택지개발사업(인천 서창 2지구) 수용재결신청 공고) 69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22호(지목별 평균치(개발제한구역 제외) 고시) 70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23호(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72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24호(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8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7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2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 태풍이나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등으로 남동구 자율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대응 및 복구활동에 기여하고자 1988. 5. 1. 조례 제30호 “남동구수방단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자연재해대책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 본문 ”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08, ☎ 453-2333, FAX 453-23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태풍이나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등으로 남동구 자율 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대응 및 복구활동에 기여하고자 1988. 5. 1. 조례 제30호 “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자율방재단의 설치와 명칭, 조직 및 단장 임명(안 제2조에서 제4조)
- 자율방재단의 임원의 임무 및 해임에 관한사항(안 제5조, 제6조)
- 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안 제7조)
- 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와 범위 및 기능별로 구성운영(안 제8조)
- 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경비지원(안 제9조, 제10조)
- 단원의 금지행위 및 출입증, 교육, 훈련 사항(안 제11조에서 제14조)
- 방재단에 대한 감독권(안 제16조)
-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 폐지(안 부칙 제2항)

■ 본문 : “별첨”

■ 참고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 : 소방방재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난의 발생 시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의 자율 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율방재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 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⑨ 동의 방재단원은 남동구 방재단원이 되며 남동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 동의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통할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내용 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행정동 단위 대표는 동의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행정동 단위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등) ① 단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단장, 간사, 행정동 단위 대표,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남동구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단장이 제1항 및 제11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 할 수 있다.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검토·조정하거나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남동구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 행정동별 대표, 방재 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 등 홍보
 -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관리운영
 -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고 각 반 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단위 방송장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줄 수 있다.

제10조(활동 및 경비지원)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별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 표” 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남동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체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 ⑩ 구청장은 활동비 등의 지원함에 있어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 표”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연1회 2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남동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방재단 및 단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④ 방재단장은 자율방재단의 조직의 구성과 방재활동사항 및 교육훈련 등 구청장의 통지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1988. 5. 1. 조례 제30호에 의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명장

주소 :

성명 :

귀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자
율방재단의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일반전화	휴대전화
1								
2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학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 활동인원 여건 등을 감안 연명작성 가능 함.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단장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사 진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5.5cm

자 율 방 재 단 원 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0000. 0. 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7.7cm

남동구청장직인 사용

[참 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대응·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그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폐지되는 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

1988. 5. 1 조례 제 30호

전문개정 1997. 4.16 조례 제465호

2001. 1. 6 조례 제597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 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비 유도
3.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 3 조(조직) ① 수방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
3.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미만자 및 60세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 4 조(단장)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 5 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 가. 주민대피유도
 -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 마.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임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 라. 재해지구의 정리, 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 나.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 라.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제 6 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 7 조(기타)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16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6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준 조례(안) [소방방재청]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방재단은 ○○시(군·구)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 "○○시(군·구)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4조 (조직)

-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군·구)장이 위촉한다.
-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⑨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군·구)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군·구)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⑩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⑤ 대표는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시(군·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자치단체의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군·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군·구)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등)

-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군·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군·구)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⑦ 단장은 매년 ○○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군·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시(군·구)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군·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⑨ ○○시(군·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구·군)장이 인정하는 비용
-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구·군)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금지 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군·구)장이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구)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군·구)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군·구)장과 협정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 ① ○○시(군·구)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0일 까지 ○○시(구·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구·군)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75 호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20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5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지정기간 : 2007년 5월 31일 ~ 2008년 5월 30일(1년간)

2. 대상지역

건설교통부 공고 2006-199호(2006.5.30)로 지정 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구분		대 상 지 역	면적(km ²)
계			9,872.7
수 도 권, 광 역 권, 개 발 제 한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남양주 · 시흥 · 광명 · 부천 · 성남 · 안양 · 수원 · 안산 · 구리 · 의왕 · 과천 · 고양 · 하남 · 군포 · 용인 · 화성 · 광주 · 김포시, 양주 · 양평군	1,566.8
	부산권	부산광역시, 김해 · 양산시(울산광역시)	597.1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산시, 달성 · 칠곡 · 고령군	536.5
	광주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 · 화순 · 장성군	554.7
	대전권	대전광역시, 공주 · 논산 · 계룡시, 금산 · 연기 · 옥천 · 청원군	441.1
	울산권	울산광역시	283.6
	마창진권	마산 · 창원 · 진해 · 김해시, 함안군	314.2

구분		대 상 지 역	면적(km ²)
계			9,872.7
수 도 권, 녹지·용도 미지정· 도시지역 외의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2006.5.30. 당시 따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90.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2007.5.30. 당시 따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903.0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도시지역외의 지역 제외),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춘리 제외), 파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 제외),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2007.5.30. 당시 따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4,584.8

3.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m ² 초과시
	상업지역	200m ² 초과시
	공업지역	660m ² 초과시
	녹지지역	100m ²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m ²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m ² 초과시
	임야	1,000m ² 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m ² 초과시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 20m²초과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열 램 대 장

연번	일자	주 소	성 명	열람의견	서 명	비고

열 램 대 장

연번	일자	주 소	성 명	열람의견	서 명	비고

열 램 대 장

연번	일자	주 소	성 명	열람의견	서 명	비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81 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7. 6. 11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7. 5. 28 ~ 2007. 6. 11(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거7198	홍성추	서구 가정동 498-1	인천지방법원 (사건96카단28649)	최연옥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49-3 한동빌라101호
인천80가9783	신선우	남동구 간석동772-9	인천지방법원 (사건2000카단30127)	김영수	부평구 부개동420-13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41)

2007. 5.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7-582호

도로의 지정 · 공고

건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 ·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로현황

- 가. 위 치 : 수산동 338-2, 338-4
- 나. 도로길이 : 25 m
- 다. 도로너비 : 6 m
- 라. 도로면적 : 143 m²
- 마. 토지소유자 :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 바. 도로지정사유 : 건축허가(신축)

2. 건축허가현황

- 가. 위 치 : 수산동 334-1
- 나. 건 축 주 :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 다. 허 가 일 : 2007. 5. 29.
- 라. 용 도 : 종교시설
- 마. 규 모 : 연면적 838.02m², 지하1층/지상2층. 끝.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8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 5. 2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

2. 제정취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 등을 할 때에 전문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위하여 우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여 대비함으로써 자연재해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 본문 ”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1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08, ☎ 453-2342, FAX 453-23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그 목적을 갖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자 함이며, 이 위원회로 하여금 사전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여 대비함으로써 자연재해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임기 및 검토사항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회의 운영 및 위원의 검토의견 제출 (안 제6조, 제7조)
- 검토협의 요청대상 및 공정의무, 비밀 준수 의무(안 제9조에서 제11조)
- 간사 등 회의록 작성사항과 운영세칙(안 제12조에서 제15조)

☐ 본 문 : “붙임참조”

☐ 참고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 : 소방방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및 분석 할 사전협의를 위하여 남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자연재해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점검토항목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할 때 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검토위원회 위원 및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의 과반이상의 출석으로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원들에게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게 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출된 재해저감방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등)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4조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검토의견 중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별 검토의견이 상호 배치되는 등 의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거나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요청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의[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부서장은 검토위원회에 반드시 검토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의무 등)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이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용역 등 기타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 참여금지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중 검토대상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①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검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폐회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등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상황
5. 위원의 발언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회의록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검토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 대상사업명 :

1. 총괄의견

2. 세부검토의견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검 토 위 원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 대상사업명 :

1. 총괄의견

2. 분야별 검토의견

○ 토질·지반분야

○ 수리·수문분야

○ 기타분야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검 토 위 원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

[참 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 의)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 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하 "위원"이라 함)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⑥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 (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8조 (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 (수당과 여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87 호

대부업등록 직권 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제1항 규정에 의거 대부업 영업실태 조사결과 소재불명인 업소에 대하여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의견 통지가 없어 다음 대부업자에 대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공고합니다.

2007. 5.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 5. 30 ~ 6. 14(15일간)
2. 공 고 명 : 대부업등록 직권취소 공고
3. 취소일자 : 2007. 5.30
4. 처분대상 : 대부업법 위반 16개 업체(명단 별첨)
5. 처분내용 : 대부업등록 직권 취소
 - 등록취소된 업체의 대표자는 동법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일로 부터 5년간 대부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6. 처분사유 : 소재확인불가(주사무소 소재불명 및 미거주, 전화불통 등)
7. 근거법령 :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
8. 이의제기안내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032-453-26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2007. 5.30

일련 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개 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법적근거)
1	인천-248	뱅크라인	남준규	구월3동 1119-3 관석빌딩 201호	영업소 소재 불명(공시송달 의견통지없음)	등록취소 (대부업의등록및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법 률 제13조제2항5호)
2	인천-648	플러스론	김유리	구월1동 1129-17,18 노빌리안 2차 1007호	"	"
3	남동-41	하 나 (HANA CREDIT)	염성환	구월1동 1129-22 노빌리안 명품 309호	"	"
4	남동-54	FINE CAPITAL	추연택	구월1동 1222-16 세정빌딩 101호	"	"
5	남동-60	씨티크레디트	홍준표	구월1동 1129-19 이노프라자텔 601호	"	"
6	남동-100	원 흥	성순철	구월1동 1129-27 노빌리안 2차 605호	"	"
7	남동06-2	O.K	정진환	구월1동 1449-3 한밭프라자 403호	"	"
8	인천-60	성진크레디트	조현덕	간석4동 390-3	"	"
9	인천-80	(주)성도기업	이연옥	간석3동 770-8	"	"
10	남동-33	한나금융컨설 팅	박경균	간석1동 320-9 3층	"	"
11	남동-20	대 산	김현철	간석4동 616-24	"	"
12	남동-26	대 광	김태칠	간석4동 616-6 범양상가 205호	"	"
13	남동06-27	누 리	이영진	구월1동 1133-12 한빛빌딩 604호	"	"
14	남동-101	성은기획	문탁현	간석4동 616-79 성은빌딩 4층	"	"
15	남동-35	론메이저	권영희	간석1동 313-3 형진프라자 321호	"	"
16	남동-28	대 성	정우연	간석4동 231-1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89 호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7. 5. 3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기 준 일 : 2007년 1월 1일 기준
- 대 상 : 41,567필지
- 결정내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개별통지)

■ 이의신청

- 기 간 : 2007. 6. 1 ~ 6. 30 (30일)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 방 법 : 남동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32)453-2484,2486

[illegible]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90 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자진폐차 및 자진회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처벌(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6월 0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 6. 05. ~ 2007. 6. 24.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범칙처분) : 2007. 6. 24.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논현동 423-2 ☎032-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184 ☎032-442-6660)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726-7 ☎032-814-4400)
4. 대상차량 : 인천31너2878(비스토)외 24대 (내역별첨)
5. 문 의 처 :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32-453-2920~6)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연 번	방치차량			소유주		보관장소
	차량 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명	주소	
147	인천31 너2878	비스토	남동공단128BL-8LT 앞	김은하	인천 남동구 남촌동571-1호 청호@103/501호	기전폐차사업소
149	인천31 러9670	아벨라	만수3동109-317호 앞(동부초교 위)	조승오	인천 계양구 계산동966-13호	기전폐차사업소
151	인천30 두8023	티코	간석3동37-121호 산호빌라 앞	김종선(0 3.2/10사 망말소)	인천 남동구 간석3동37-121호 산호빌라201호	기전폐차사업소
154	경남43 가5280	엘란트 라	만수6동1041-3호 은빛프라자 뒤 주차장 내	정철영	경남 창원군 영산면 서리222-4호	기전폐차사업소
158	인천32 나6045	프라이 드베타	만수2동1-2호 만수교회 앞	김필상(0 5.5/25사 망말소)	인천 남동구 만수2동1-145호	인천폐차사업소
159	경기35 두4988	르망	남촌동510-74호 남촌꽃도매 옆	윤창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61-31호	인천폐차사업소
160	인천30 너6183	소나타2	만수4동 주공@2단지 212동 앞	김효성	인천 남동구 구월1동260-5호 동아@3/513호	인천폐차사업소
161	인천60 나6374	티뷰론	만수5동885-11호 옆	유호수	인천 연수구 연수동486-3호, 202호	인천폐차사업소
162	인천4가2 615	소나타2	만수2동5-330호 공원 옆	(주)보만 북인천 소비자 유통	인천 계양구 계산동931-51호	인천폐차사업소
164	인천32 다1030	프라이 드웨곤	논현동 주공@12단지 앞 40번지 앞 골목	노정화(0 7.1/24사 망말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40번지	서울폐차사업소
165	인천31 구1367	그랜저	남동공단공구상가 지하주차장 내	고도홍	서울 강남구 삼성동144-7호	서울폐차사업소
168	경기8르 7982	와이드 봉고	운연동458-3호 앞(경인 제2고속도로 톨게이트 옆)	박찬숙	서울 은평구 갈현동448-19호	서울폐차사업소
170	인천31 머5021	엑셀	구월1동 견인차량보관소 옆	JONES JENNIF ER	인천 연수구 청학동461-14호, 201호	서울폐차사업소
171	인천3러2 803	엑센트	구월1동 견인차량보관소 옆	김두섭(0 4.6/11사 망말소)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61-5호	서울폐차사업소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연 번	방치차량			소유주		보관장소
	차량 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명	주소	
172	서울4루 8088	소나타	구월1동 건인차량보관소 옆	조태형	서울 마포구 공덕동7-18호	서울폐차사업소
179	인천30 거4203	엑센트	간석1동508-93호 옆	조진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856-11호, B01호	기전폐차사업소
181	45다5591	크레도 스	만수2동 신동아@ 관리실 앞	조정연	경기 시흥시 신천동889-15호	기전폐차사업소
184	01조8681	코란도	남동공단98BL-15LT 앞	김종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35-32호, 1층	기전폐차사업소
185	08소8140	소나타2	논현동 주공@8단지 상가 앞	YUNUS OV ABDUL LA	경기 화성시 정남면 오일리396-1호	기전폐차사업소
188	인천31 두7288	포텐샤	만수5동884-8호(사유지)	김병기	인천 남구 학익동50번지 신동아@105/405호	기전폐차사업소
190	서울50 마7533	엘란트 라	간석4동614-9호 석정초교옆 사잇길	김현철	서울 구로구 개봉동33-120호	기전폐차사업소
194	인천30 루7652	레간자	구월1동1159-10호 앞	박혁성	인천 남구 문학동396-5호, 307호	인천폐차사업소
196	경기81 마1193	그레이 스	만수1동 주공@7단지 앞	김호영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2046-6호, B02호	인천폐차사업소
197	서울83 너9884	베스타	만수1동 주공@7단지 앞	(주)필운 건설중 기	서울 구로구 개봉동97-33호	인천폐차사업소
198	인천31 나2283	아반떼	남동공단 인천폐차사업소 옆	김준홍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439-3호, 가동	인천폐차사업소
					이 하 여 백	

이해관계인 명부

연 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64	인천32다 1030	프라이드웨곤	노정화(07.1/24사망 말소)	경기 고양시청(덕양산교)
196	경기81마 1193	그레이스	김호영	경기 고양시청(차량,환경,일산세무,일산서구환경)
181	45다5591	크레도스	조정연	경기 과천시 별양동1-23호 (주)코오롱캐피탈
198	인천31나 2283	아반떼	김준홍	경기 광명시청(지민)
184	01조8681	코란도	김종윤	경기 군포시청(교통)
190	서울50마 7533	엘란트라	김현철	경기 군포시청(교통)
184	01조8681	코란도	김종윤	경기 남양주시청(교통)
158	인천32나 6045	프라이드베타	김필상(05.5/25사망 말소)	경기 부천시청(교지)
165	인천31구 1367	그랜저	고도홍	경기 부천시청(교지,소사경교,원미경교)
198	인천31나 2283	아반떼	김준홍	경기 부천시청(교지,원미경교,오정경교)
171	인천3러 2803	엑센트	김두섭(04.6/11사망 말소)	경기 부천시청(소사지경,오정지경)
160	인천30너 6183	소나타2	김효성	경기 부천시청(원미경교)
168	경기8르 7982	와이드봉고	박찬숙	경기 부천시청(정수,차등,원미지경,원미환위)
181	45다5591	크레도스	조정연	경기 성남시청(분당가로경관)
196	경기81마 1193	그레이스	김호영	경기 성남시청(차량,중원환위)
198	인천31나 2283	아반떼	김준홍	경기 시흥시청(교지)
181	45다5591	크레도스	조정연	경기 시흥시청(교통,세무,환보,차량책보,차량검사)
190	서울50마 7533	엘란트라	김현철	경기 안산시청(단원산교)
159	경기35두 4988	르망	윤창민	경기 안양경찰서(교통)
184	01조8681	코란도	김종윤	경기 안양경찰서(교통)
184	01조8681	코란도	김종윤	경기 안양시청(시민,환위,만안세무,만안환경)
159	경기35두 4988	르망	윤창민	경기 안양시청(환위,시민,만안세무)

이해관계인 명부

연 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85	08소8140	소나타2	YUNUSOV ABDULLA	경기 화성경찰서(교통)
185	08소8140	소나타2	YUNUSOV ABDULLA	경기 화성시청(동부민봉)
154	경남43가 5280	엘란트라	정철영	경남 창녕경찰서(교통)
154	경남43가 5280	엘란트라	정철영	경남 창녕군청(재무,지경)
170	인천31머 5021	엑셀	JONES JENNIFER L	경북 안동시청(교통)
172	서울4루 8088	소나타	조태형	국민 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159	경기35두 4988	르망	윤창민	국민 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149	인천31러 9670	아벨라	조승오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147	인천31너 2878	비스토	김은하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164	인천32다 1030	프라이드웨곤	노정화(07.1/24사망 말소)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188	인천31두 7288	포텐샤	김병기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194	인천30루 7652	레간자	박혁성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165	인천31구 1367	그랜저	고도홍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198	인천31나 2283	아반떼	김준홍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79	인천30거 4203	엑센트	조진경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160	인천30녀61 83	소나타2	김효성	근로 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194	인천30루 7652	레간자	박혁성	대전 대덕구 송촌동292-3호 (주)대우캐피탈
159	경기35두 4988	르망	윤창민	부산 동구청(교통)
159	경기35두 4988	르망	윤창민	부산 사하구청(세무,교통)
159	경기35두 4988	르망	윤창민	부산 중구청(교통)
149	인천31러 9670	아벨라	조승오	서울 강남구 역삼동642-19호 (주)엘지카드

이해관계인 명부

연 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64	인천32다 1030	프라이드웨곤	노정화(07.1/24사망 말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642-19호 ㈜엘지카드
188	인천31두 7288	포텐샤	김병기	서울 강남구 역삼동642-19호 ㈜엘지카드
179	인천30거 4203	엑센트	조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642-19호 ㈜엘지캐피탈
165	인천31구 1367	그랜저	고도홍	서울 강남구청(교통)
172	서울4루 8088	소나타	조태형	서울 강남구청(교통)
181	45다5591	크레도스	조정연	서울 강남구청(교통)
181	45다5591	크레도스	조정연	서울 강동구청(교통)
172	서울4루 8088	소나타	조태형	서울 강북구청(교통)
162	인천4가 2615	소나타	㈜보만북인천소비자 유통	서울 강서구청(교통)
184	01조8681	코란도	김종윤	서울 관악구청(교통)
197	서울83너 9884	베스타	(주)필운건설중기	서울 구로경찰서(교통)
162	인천4가 2615	소나타	㈜보만북인천소비자 유통	서울 구로구청(교통)
190	서울50마 7533	엘란트라	김현철	서울 구로구청(교통,세관,환경,교지,세2)
197	서울83너 9884	베스타	(주)필운건설중기	서울 구로구청(세무,환경,구봉,민원,교통)
162	인천4가 2615	소나타	㈜보만북인천소비자 유통	서울 금천구청(교통)
198	인천31나 2283	아반떼	김준홍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222-24호 오명숙
190	서울50마 7533	엘란트라	김현철	서울 동작구청(교통)
172	서울4루 8088	소나타	조태형	서울 마포경찰서(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 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58	인천32나 6045	프라이드베타	김필상(05.5/25사망 말소)	서울 마포구청(교통)
172	서울4루 8088	소나타	조태형	서울 마포구청(세무1,교행,청환)
158	인천32나 6045	프라이드베타	김필상(05.5/25사망 말소)	서울 서대문구청(교통)
168	경기8르 7982	와이드봉고	박찬숙	서울 서대문구청(교통)
194	인천30루 7652	레간자	박혁성	서울 서초구 방배동935-34호 (주)외환신용카드
196	경기81마 1193	그레이스	김호영	서울 서초구청(교통)
181	45다5591	크레도스	조정연	서울 성동구청(교통)
196	경기81마 1193	그레이스	김호영	서울 성북구청(교관)
181	45다5591	크레도스	조정연	서울 송파경찰서(교통)
162	인천4가 2615	소나타	(주)보만복인천소비자 유통	서울 송파구청(교통)
181	45다5591	크레도스	조정연	서울 송파구청(세무2,교통)
162	인천4가 2615	소나타	(주)보만복인천소비자 유통	서울 양천구청(교지)
161	인천60나 6374	티뷰론	유호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5-21호 (주)현대캐피탈
198	인천31나 2283	아반떼	김준홍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5-21호 (주)현대캐피탈
149	인천31러 9670	아벨라	조승오	서울 영등포구청(교지)
162	인천4가 2615	소나타	(주)보만복인천소비자 유통	서울 영등포구청(교지)
170	인천31머 5021	엑셀	JONES JENNIFER L	서울 용산구청(교통)
172	서울4루 8088	소나타	조태형	서울 용산구청(교통)
196	경기81마 1193	그레이스	김호영	서울 용산구청(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 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81	45다5591	크레도스	조정연	서울 은평구청(교통)
168	경기8르 7982	와이드봉고	박찬숙	서울 종로구청(교지)
165	인천31구 1367	그랜저	고도홍	서울 중구 을지로1가87번지 (주)삼성카드
161	인천60나 6374	티뷰론	유호수	서울 중구청(교통)
162	인천4가 2615	소나타	(주)보만복인천소비자 유통	서울 중구청(교통)
164	인천32다 1030	프라이드웨곤	노정화(07.1/24사망 말소)	서울 중구청(교통)
161	인천60나 6374	티뷰론	유호수	인천 강화경찰서(교통)
171	인천3러 2803	엑센트	김두섭(04.6/11사망 말소)	인천 강화군청(경교,재무)
162	인천4가 2615	소나타	(주)보만복인천소비자 유통	인천 계양경찰서(교통)
149	인천31러 9670	아벨라	조승오	인천 계양구청(세무,교행,환위)
162	인천4가 2615	소나타	(주)보만복인천소비자 유통	인천 계양구청(세무,환위)
160	인천30너 6183	소나타2	김효성	인천 남구청(교통)
170	인천31머 5021	엑셀	JONES JENNIFER L	인천 남구청(교통)
171	인천3러 2803	엑센트	김두섭(04.6/11사망 말소)	인천 남구청(교통)
188	인천31두 7288	포텐샤	김병기	인천 남구청(세무,교통,환녹)
194	인천30루 7652	레간자	박혁성	인천 남구청(차량,교통,세무,환녹)
147	인천31너 2878	비스토	김은하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158	인천32나 6045	프라이드메타	김필상(05.5/25사망 말소)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164	인천32다 1030	프라이드웨곤	노정화(07.1/24사망 말소)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171	인천3러 2803	엑센트	김두섭(04.6/11사망 말소)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165	인천31구 1367	그랜저	고도홍	인천 남동구청(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70	인천31머 5021	엑셀	JONES JENNIFER L	인천 남동구청(교통)
181	45다5591	크레도스	조정연	인천 남동구청(교통)
188	인천31두 7288	포텐샤	김병기	인천 남동구청(교통)
194	인천30루 7652	레간자	박혁성	인천 남동구청(교통)
196	경기81마 1193	그레이스	김호영	인천 남동구청(교통)
164	인천32다 1030	프라이드웨곤	노정화(07.1/24사망 말소)	인천 남동구청(교통,세무)
171	인천3러 2803	엑센트	김두섭(04.6/11사망 말소)	인천 남동구청(세무)
147	인천31너 2878	비스토	김은하	인천 남동구청(세무,교통)
158	인천32나 6045	프라이드베타	김필상(05.5/25사망 말소)	인천 남동구청(세무,교통,환위)
160	인천30너 6183	소나타2	김효성	인천 남동구청(세무,교통,환위)
151	인천30두 8023	티코	김종선(03.2/10사망 말소)	인천 남동구청(세무,환위,교통)
165	인천31구 1367	그랜저	고도홍	인천 동구청(교통,차량,세무,환위)
165	인천31구 1367	그랜저	고도홍	인천 부평경찰서(교통)
165	인천31구 1367	그랜저	고도홍	인천 부평구청(교통)
171	인천3러 2803	엑센트	김두섭(04.6/11사망 말소)	인천 부평구청(교통)
149	인천31러 9670	아벨라	조승오	인천 부평구청(교통)
168	경기8르 7982	와이드봉고	박찬숙	인천 부평구청(교통)
170	인천31머 5021	엑셀	JONES JENNIFER L	인천 부평구청(교통)
168	경기8르 7982	와이드봉고	박찬숙	인천 서구청(교통)
198	인천31나 2283	아반떼	김준홍	인천 서구청(세무,교통,환위)
198	인천31나 2283	아반떼	김준홍	인천 서부경찰서(교통)
165	인천31구 1367	그랜저	고도홍	인천 시청(교관)

이해관계인 명부

연 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196	경기81마 1193	그레이트	김호영	인천 시청(교관)
161	인천60나 6374	티뷰론	유호수	인천 연수경찰서(교통)
170	인천31머 5021	엑셀	JONES JENNIFER L	인천 연수경찰서(교통)
194	인천30루 7652	레간자	박혁성	인천 연수경찰서(교통)
147	인천31너 2878	비스토	김은하	인천 연수구 연수동543-19호 2층 우창준
147	인천31너 2878	비스토	김은하	인천 연수구청(교통)
194	인천30루 7652	레간자	박혁성	인천 연수구청(교통)
196	경기81마 1193	그레이트	김호영	인천 연수구청(교통)
161	인천60나 6374	티뷰론	유호수	인천 연수구청(교통,차등,세무,환위,교행)
170	인천31머 5021	엑셀	JONES JENNIFER L	인천 연수구청(세무,차량,교통,환위)
184	01조8681	코란도	김종윤	인천 중구청(세무)
179	인천30거 4203	엑센트	조진경	인천 중구청(세무,환위,교행)
188	인천31두 7288	포텐샤	김병기	인천 중부경찰서(교통)
161	인천60나 6374	티뷰론	유호수	인천 지방경찰청(생활안전교통과)
198	인천31나 2283	아반떼	김준홍	인천 지방법원(사건2001카단13519)
165	인천31구 1367	그랜저	고도홍	인천 지방법원(사건2003카단19586)
194	인천30루 7652	레간자	박혁성	인천 지방법원(사건2003카단4489)
147	인천31너 2878	비스토	김은하	인천 지방법원(사건99카단39782)
159	경기35두 4988	르망	윤창민	충북 충주시청(교통,세정)
				이 하 여 백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93 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만수동 성현로 일원 교통영향분석 용역
- 용역위치 : 남동구 만수동 1, 2, 5번지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용역개요 : 만수동 성현로 일원 $A = 298,996m^2$
- 설계금액 : ₩39,908,000원(추정가액 36,280,000원 부가가치세 3,628,000원)
- 기초금액 : ₩39,908,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5월 31일(목요일) 09:00 ~ 06월 11일 (월요일)15: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6월 11일(월요일) 16: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 중 건설부문 (교통)전문분야 신고를 필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인(₩39,908,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이행서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2-453-296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5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99 호

공 시 송 달

성 명	교원 외 4명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07년 5월 부과분 주민세
서 류 의 내 용	2007년 5월 법인균등할,법인세할 주민세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및,“이사”, “반송함 장기방치”,“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07. 5. 31일을 2007. 6. 28일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 06. 0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주민세 2007.5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법인균등할, 법인세할)

순 번	세목	성명	주소	과세번호		세액	반송사유
1	주민세-법 인균등할	교원	서울 종로구 관철동 - 258번지 구몬빌딩 12층 경리부	510	000001	125,000	이사
2	주민세-법 인세할	약수퍼니처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4-14번지	510	000001	689,520	수취인미 거주
3	주민세-법 인세할	보광케미칼	전북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326-6번지	670	000001	800,800	이사
4	주민세-법 인세할	위너텍월드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6-1번지 공단 100-2	670	000003	5,350,150	수취인미 거주
5	주민세-법 인세할	대일금속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3-6번지	670	000004	1,088,660	수취인미 거주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00 호

공 시 송 달

성 명 박성식외 56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등록세 5월 부과분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등록세 미납부자 부과분 및 직권분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납기를 2007.6.28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007.5월 취득세, 등록세 공시송달내역

번 호	납세자명	등록번호	주소	과세 년월	세목	과세번호
1	박성식	680902- *****	인천 계양구 오류동 180번지 5-1005	200705	취득세	510-5
2	신영희	580505- *****	인천 동구 송림동 8-400번지	200705	취득세	510-7
3	강윤구	840214- *****	인천 서구 가좌동 212-26번지	200705	취득세	510-9
4	이대수	840416- *****	인천 남동구 구월1동 201-129번지 (34/3) 솔로타운8차 A-102	200705	취득세	510-14
5	신영미외 2인	660323- *****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8-16 대정원룸 401호	200705	취득세	510-15
6	권혁범	761025- *****	경기 부천시소사구 괴안동 92-10번지 오덕파크빌라 가-302	200705	취득세	510-16
7	정경록	711229- *****	인천 남구 주안동 1332-203번지 뉴서울빌라 401호	200705	취득세	520-1
8	이영석	750310-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1-42번지 202호	200705	취득세	520-2
9	황미정	720626- *****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5-15번지 (2/4) 302호	200705	취득세	520-5
10	이상욱	790215- *****	서울 성동구 용답동 147-6번지 태화연립 201호	200705	취득세	520-6
11	유시영	611128- *****	인천 남동구 구월동 캐나다 브릿지씨 콜롬비아주 씨리 1번지 154 에비뉴스트리트 10889	200705	취득세	520-7
12	최영희	521210- *****	서울 서초구 잠원동 34-19번지 204호	200705	취득세	521-2
13	조용숙	631005- *****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2동 1157-54번지 (35/3) 경남아너스빌 101-1308	200705	취득세	521-3
14	최안나	830818- *****	경기 시흥시 은행동 538-2번지 102-304	200705	취득세	522-2
15	김대성	740712- *****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8번지 성원빌라 101호	200705	취득세	522-4
16	박군숙	610113- *****	인천 남동구 구월4동 349-605번지 (7/3) 상우빌라 A-102	200705	취득세	522-8
17	박윤순	610424- *****	경기 김포시 풍무동 740번지 장릉마을 101-401	200705	취득세	522-9
18	이복희	601011-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3-1번지 상가주택2층	200705	취득세	522-12
19	이태정	840911- *****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4-208번지	200705	취득세	522-18

2007.5월 취득세, 등록세 공시송달내역

번호	납세자명	등록번호	주소	과세 년월	세목	과세번호
20	박명순	570827- *****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103-201	200705	취득세	530-5
21	장은숙	850615- *****	충북 청주시흥덕구 복대동 2552번지 201호	200705	취득세	530-7
22	최향	740403- *****	인천 남동구 간석동 158-1번지 희망아파트 5-505	200705	취득세	540-1
23	전정진	790419- *****	인천 남구 용현동 96-23번지	200705	취득세	540-2
24	(주) 시쓰리	120111- *****	인천 계양구 계산동 153-6번지 주영빌딩 302호	200705	취득세	540-3
25	최현수	710828- *****	인천 남동구 간석동 66-20번지 대경빌라 703-302	200705	취득세	550-1
26	김태욱	830211- *****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3번지 동아골든맨션 3-302	200705	취득세	550-3
27	박영신	530711- *****	인천 남동구 간석동 109-12번지 삼원빌라 301호	200705	취득세	550-6
28	김영근	731126- *****	인천 동구 송림3동 70-38번지 (12/3)	200705	취득세	550-8
29	김영근	731126- *****	인천 동구 송림3동 70-38번지 (12/3)	200705	취득세	550-13
30	윤덕례	601107- *****	인천 남동구 간석동 37-244번지 새빛하이츠빌라 3차동 401호	200705	취득세	550-14
31	이순희	691215- *****	인천 남동구 구월2동 7-121번지 (23/2) 금영다세대주택 나-301	200705	취득세	550-15
32	박영일	760513- *****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내동 609-11번지 LG맨션 403호	200705	취득세	550-17
33	박옥순	421220- *****	인천 남동구 간석3동 224-716번지 (10/2) 소망빌라 2-403	200705	취득세	550-19
34	심은경	621030- *****	인천 부평구 삼산동 388번지 미래타운 204-1104	200705	취득세	560-6
35	윤정자	650130- *****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2-53번지	200705	취득세	570-2
36	이순희	411024- *****	인천 남동구 만수동 20번지 주공아파트 615-204	200705	취득세	570-3
37	이혜경	810313- *****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4-55번지 가-305	200705	취득세	580-1
38	이영자	340310- *****	인천 남동구 만수3동 843-16번지 (19/4)	200705	취득세	580-4

2007.5월 취득세, 등록세 공시송달내역

번 호	납세자명	등록번호	주소	과세 년월	세목	과세번호
39	유희	850314- *****	인천 남구 주안동 915-23번지 한국빌라 202호	200705	취득세	581-3
40	박계수	630423- *****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28-7번지 (1/3) 그린다세대주택 1-301	200705	취득세	582-2
41	김명분	600420- *****	경기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1589-1번지 한가람 403-1004	200705	취득세	583-4
42	유은주	640912- *****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39-1번지 (27/5) 동성그린타운 501호	200705	취득세	583-5
43	안호정	711105- *****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3번지 (23/1) 주공APT 1001-105	200705	취득세	583-9
44	이용숙	601020- *****	인천 남동구 서창동 538번지 (11/3) 태평APT 206-1707	200705	취득세	650-4
45	이용숙	601020- *****	인천 남동구 서창동 538번지 (11/3) 태평APT 206-1707	200705	취득세	650-5
46	전영배	600725- *****	인천 부평구 산곡동 250-1번지 은하연립 가-202	200705	취득세	660-6
47	문진숙	590715- *****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78-3번지 (30/1) 하이테크빌리지 B01호	200705	취득세	660-10
48	정지선	720102- *****	인천 남동구 남촌동 358-3번지 한양빌라 A-지1	200705	취득세	660-11
49	이순리	661004- *****	인천 남동구 남촌동 352-17번지 평화빌라 402호	200705	취득세	660-12
50	이상훈	770218- *****	인천 남구 주안2동 586-1번지 (41/3) 동원빌라 101호	200705	취득세	660-14
51	박덕준	630616- *****	인천 부평구 부개동 390-3번지 1층	200705	취득세	670-5
52	이관홍	630716- *****	인천 남동구 논현동 603-1번지 (34/1) 주공아파트 801동 502호	200705	취득세	670-6
53	최명옥	731228- *****	인천 남동구 논현동 549번지 한라아파트 1310호	200705	취득세	670-9
54	최명숙	680121- *****	인천 남동구 논현동 549번지 한라아파트 101-604	200705	취득세	670-11
55	정경록	711229- *****	인천 남구 주안동 1332-203번지 뉴서울빌라 401호	200705	등록세	520-1
56	최안나	830818- *****	경기 시흥시 은행동 538-2번지 102-304	200705	등록세	522-2
57	최현수	710828- *****	인천 남동구 간석동 66-20번지 대경빌라 703동 302호	200705	등록세	550-1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01 호

택지개발사업(인천서창2지구) 수용재결신청 공고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인천서창2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남동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수용재결과 관련된 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0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2. 사업의 명칭 : 인천서창(2) 택지개발사업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
4. 열람기간 : 2007. 06. 04 - 2007. 06. 19
5.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54)
6. 기 타 사 항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 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으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22 호

지목별 평균치(개발제한구역제외)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4호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지목별 평균치의 개요

- 가. 기 준 일 : 2007년 1월 1일
- 나. 단위면적 : m²
- 다. 지목현황 : 28지목
- 라. 고시내역 : “별첨”

2007. 5. 3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지목별 평균치 (개발제한구역제외)

(단위 : 원/m²)

구 분	평 균 치
전 체	709,168
전	446,182
답	255,484
과수원	273,240
목장용지	447,057
임야	53,833
광천지	-
염전	124,740
대	1,231,900
공장용지	786,739
학교용지	1,035,541
주차장	1,118,593
주유소용지	1,567,959
창고용지	779,250
도로	375,849
철도용지	238,360
제방	87,095
하천	189,278
구거	232,556
유지	226,482
양어장	-
수도용지	190,712
공원	250,980
체육용지	-
유원지	250,000
종교용지	804,535
사적지	290,000
묘지	578,498
잡종지	521,2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07 - 23 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조례”하 한다) 제6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7. 6. 1.

남동구청장

제1조(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제한·완화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있는 광고 문화 조성과 시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지 구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상업용지)
논현2택지개발지구	논현·고잔동 일원	2,545,174	140,209
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	고잔동 591번지일원	2,383,283	42,412

제3조(일반적인 표시제한·완화 사항) ① 광고물 등의 문자 및 숫자(이하 “문자 등”이라 한다)

1. 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 한자, 특수문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업종 및 취급 상품을 알 수 있는 외국문자 사용시 한글을 병행해야 한다.
2.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 표시내용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문자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저속한 내용 또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② 광고물 등의 도안

1. 도시경관의 향상 및 광고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상징도안, 상징이미지, 픽토그램 또는 여백 등(이하 “도안 등”이라 한다)을 광고물에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도안 등에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도안, 이미지, 그림, 업소주 인물사진 등을 포함하며, 당해 건물이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안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 도안 등은 통일·균형·균제·변화·반복·대칭·조화의 미 등을 고려하여 아름답게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한다.

③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 등

1. 가로형 광고물 등에 있어서 플렉스 등의 유연성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2. 광고물 등은 설치·변경 또는 제거가 용이한 광고물 등을 권장하며, 제거시 설치 흔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권장한다.
3. 연립형 광고물은 업소의 증가를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한다.

④ 광고물 등의 색채

1. 광고물 등의 색채는 당해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극적이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입체형 문자 또는 도안 이외의 표시는 원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3. 광고물 등은 파스텔톤의 색채, 광고물 등의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 등의 표시장소 · 위치

1. 법, 기타 관련 법령등 이 고시의 규정에 특별히 허용 규정이 없는 한 도로경계 및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전면유리(Curtain Wall)인 건축물에는 광고물의 게시시설을 별도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광고물 등의 설치 수량 : “~업소당 광고물 수량 제한제 및 면적총량제 병행”

1.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총 수량은 업소별 2개소 이하로 하며, 지역별 · 업소면적 등에 따라 업소당 표시가능한 총면적을 제한 하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건물 4면중 2면이 도로에 직접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3개소 이하로 한다.
2. 1호의 기준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 규정 및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상 수량제한 사항, 영 제15조제1호 규정에 의한 건물정면 4층 이상의 가로형 간판의 표시제한 사항, 영제15조제4호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의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층수 제한 사항 및 영 제17조제3호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의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제한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문이용,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광고물 수량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일반적 표시사항

1.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상호등(상호,상표,성명,주소,전화번호,영업내용 등)의 표시면적은 광고물 표시면적의 60%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표시면적의 합계가 3㎡이하인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백화점등 유통산업발전법 및 복합상영관(극장)등 영화진흥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등록을 한 건물에는 남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에 현수막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2개이하로 한다.
3. 건물외벽에 광고물부착시 표시위치는 건물전체 입주자와 공유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업소와 병행하여 표시해야 한다.

⑧ 기타사항

1. 구청장은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수량감소, 면적감소,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2.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영, 조례에 의한다.

제4조(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① 가로 간판의 표시방법**

1.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에 1개의 간판만 허용한다. 단, 건물 4면중 2면 이상이 도로에 직접 접한 업소는 2개 설치 가능하다.
2.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4층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며 1층에는 판류, 입체형 또는 복합형(세로폭 50cm이내의 게시시설에 입체형으로 표시)으로 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은 복합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고, 측면 및 후면을 포함한다.
3. 건물의 최상단에는 전면에 건물명(회사명 포함) · 건물을 상징하는 입체형 문자 또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4. 한 건물내 같은 층에 표시되는 가로형 간판은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의 80%범위내로 하되, 이웃한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고, 가로폭은 점포점유 폭 이내로 설치하되 별표1의 표시면적 범위내에서 설치한다. 단, 층간 벽면 높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상업지역의 건물정면의 주출입구(주계단 입구) 기둥 양측 1곳에 한하여 1m²범위내에서 건물명(건물상징 도형)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1.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판의 위치는 건물2층 창문 상단선 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단은 벽면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3. 업소당 표시면적은 1면의 면적이 2m²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4.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상에 표시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4층 이상 건물에 광고물을 표시 · 설치하는 경우,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각 표시물의 규격(돌출폭 · 두께 · 가로폭)을 통일시켜야 한다.

5. 건물의 양쪽 끝부분에만 설치해야 한다. 단, 건물 2면 이상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 모서리 부분중 2개소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경우 한쪽 끝에만 표시한다.

④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상업지역중 복합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게시시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1.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에 한하며,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5층 미만 건물은 표시를 금지한다.
 - 나. 5층 이상 자사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명(회사명), 그 회사의 광고내용을 전광류, 네온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단, 건물주는 반드시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2. 상업지역외 지역은 건물 전체가 1인 소유자로 연면적 1/2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1. 건축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의 부지외의 지역 또는 장소에 표시를 금지한다.
3.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1개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간판(종합사인보드)만 허용하되 설치시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⑦ 현수막의 표시방법

1. 현수막의 설치를 금지한다. 단,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목격자 또는 미아를 찾는 내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2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벽보는 지정벽보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당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청(또는 관리자)이 따로 표시를 허용하는 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⑩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1. 창문이용광고의 세로높이는 4층이하 20cm, 5층~6층 30cm, 7층이상은 40cm이내이며 가로크기는 하나의 창문틀 1/2이내에서 표시해야 한다. 단, 가로 크기는 3m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전기를 이용하여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2. 1층 창문이용 광고는 창문 하단부에서 1.3m 상단에, 2층 이상은 창문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글씨는 백색의 시트지만 가능하며, 글짜바탕 및 시야, 햇빛차단 목적등으로 썬팅시트지를 설치할 경우 이를 무채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1.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한하여 허용하며 주거 · 준주거 지역에는 표시를 금지한다. 단, 의료기관 · 약국은 표시할 수 있다.
2. 상업지역의 네온 · 전광류 표시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면적의 합계가 3㎡이하(전광류0.5㎡이하)인 경우(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제외)와 입체형 문자 · 도형에 LED를 삽입하여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광류의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내용 표출의 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숙박시설은 네온표시가 가능하나 전광류 사용은 금지한다.

⑫ 교통수단이용광고의 표시방법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⑬ 선전탑 및 아취광고, 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 공공시설이용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상업지역에서는 표시가 가능하다.

제5조(국가 등의 광고물 등 제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영 제3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광고물심의 등)

① 법, 영, 조례,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입주업소 순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계획적인 광고물등의 표시를 유도하여, 도시경관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위하여 건물주 또는 업소주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통해 광고물 표시제한·완화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는 경우 자율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그 대상, 종류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 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를 시행하기 전에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신규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의 광고물 등은 당해 표시기간까지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고시에 의한다.
- ③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법, 영, 조례에 의한다.

[별표 1]

업소당 가로형광고를 면적

지역구분	층별	업소당 가로형광고물 총면적(m²)					
		업소면적 30㎡미만	업소면적 30㎡이상 60㎡미만	업소면적 60㎡이상 100㎡미만	업소면적 100㎡이상 200㎡미만	업소면적 200㎡이상 400㎡미만	업소면적 400㎡이상
상업외 지역	1층	4(6)	5(7)	6(8)	8(10)	10(12)	12(14)
	2층-4층	5(7)	6(8)	8(10)	10(12)	12(14)	14(17)
상업지역	1층	4(6)	6(8)	8(10)	10(12)	12(14)	15(18)
	2층-4층	6(8)	8(10)	10(12)	12(14)	15(17)	17(20)
자율규정에 의한 경우		심의를 통한 별도 면적조정 적용					

※ ()는 건물 4면중 2면 이상이 도로에 직접 접한업소의 광고물 표시면적

※ 1개의 업소가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표를 적용하고, 1개의 업소가 여러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별 면적중 큰 면적에 작은 면적(면적이 같은 경우를 포함)의 50%를 가산한 면적을 총면적으로 한다. 다만, 업소면적 400㎡이상의 경우로써 총면적의 가산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시 인정하는 범위내로 한다.

① 업소면적 : 업소별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집합건축물 대장의 경우 전유부분의 면적, 일반건축물대장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또는 (임대)계약서상의 면적(전유부분 해당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업소당 가로형광고물의 총면적(m²) : 별표1 내용에 의거 면적을 제한받으며 총면적을 가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

③ 건물명, 건물상징 도형 : 건물주가 건물명 또는 건물을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세로형, 건물상단)의 총면적은 8㎡ 이내로 한다.

④ 광고물등의 면적

1. 건축물의 외장재가 건축물의 허가(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광고물의 게시시설 목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외장재가 건축물의 허가(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외장을 위하여 건축물의 완공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문자, 도형등의 면적이 건물외장재 면적의 10%이내인 경우와 건물주가 자기의 건물에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광고물의 표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계획적으로 외장재(게시시설의 형태를 포함)를 설치한 경우에 외장재 면적은 광고물등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광고물등의 면적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업소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기 표시되어 있는 광고물등의 면적이 위의 규정이내인 경우 : 위의 면적까지 표시가능

2. 기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 위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 법령상의 표시기간 동안 표시를 허용하되 표시기간이 지난 경우 초과면적 부분 제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연장,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 미관상 · 주변 여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립형광고물에 대한 특례

연립형광고물의 경우로서 미 입주업소를 위해 게시시설에 광고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소 입주시까지 건물명 또는 건물을 상징하는 도안등을 건물주가 표시할 수 있으며, 미 입주업소 입주후 당해 부분에 업소주가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완화

1. 백화점, 견본주택, 대형상가, 문화시설 기타 건축물로서 당해 광고물등의 설치가 도시미관상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념비적이거나 Landmark의 성격을 띠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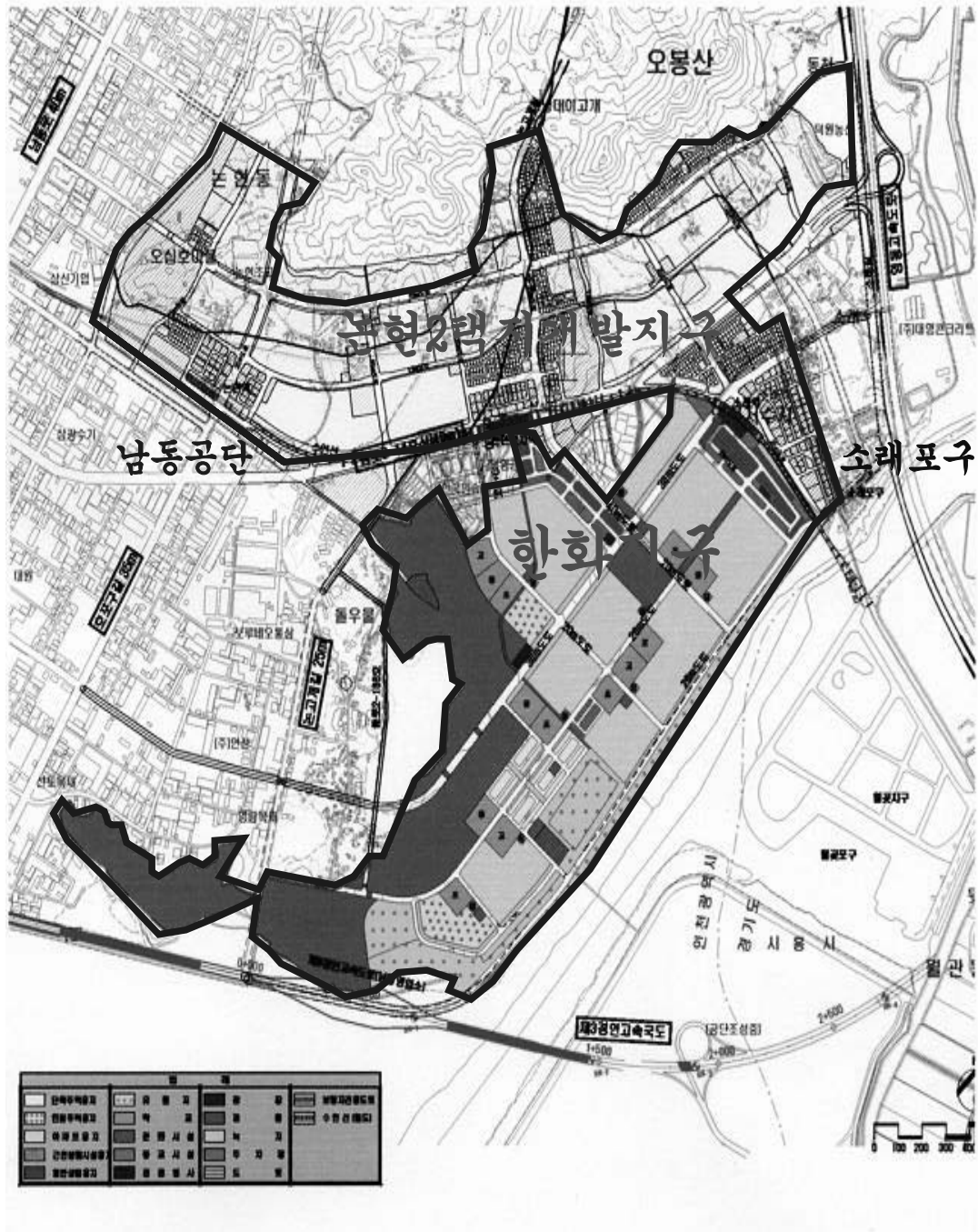
2. 업소당 가로형간판의 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몹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⑧ 허용오차

업소당 옥외광고물등의 면적제한의 허용오차(옥외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시)는 5% 이내로 한다.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2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 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한별렉스빌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한별종합건설(주) (대표자 : 장정남)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6-13 제일은혜빌딩 301호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74
- 연 면 적 : 17,460.3m²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1층, 지상5층, 3개동, 60세대
- 사 업 비 : 37,335,000천원
- 변경내역
 - 정화조 변경 : 오수정화조 설치 ⇒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유입
 - 주민운동시설 증가에 따른 연면적 변경 : 기존 17,117.48m² ⇒ 변경 17,460.3m²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6. 5. 30. ~ 2007. 6. .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